

대한상의 브리프

뉴스1 장은지 기자



제125호 2020년 6월 22일



외식업계의 옥외영업이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됐으나, 전국적으로 원칙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국내에서도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여유 있게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늘어날 전망이다.

테라스와 옥상 루프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도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원원’이다. 낡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달리 보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외식업계가 절규하는 상황이라 그간 엄격히 제한됐던 ‘테라스’ 영업 허용은 더욱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광특구에서나 할 수 있던 옥외영업을 골목 식당 구석구석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법령이 이르면 6월 중 공포된다.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영업(테라스영업)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제42조 1항, 제 43조, 별표 14 등)’을 입법 예고했다.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정했던 테라스 영업을 안전기준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포지티브 제도(원칙 금지, 예외 허용)를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한 것이 포인트다. 테라스 영업 면적은 사유지 내 공지라 할 수 있는 옥상, 전면공지(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과도한 소음 등 민원이 잦을 경우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금지도 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옥외영업 관련 법률 [현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 ▶ (포지티브 규제)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 ▶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운영



옥외영업 관련 법률 [개정안]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 허용

- ▶ (네거티브 규제)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 ▶ 공통시설기준 법제화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영업 허용 중('19.11. 기준)

외식업체 반색 “코로나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

외식업체들은 ‘조금이나마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옥상,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밀폐, 밀접, 밀집 이른바 ‘3밀’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으로의 발길이 뚝 끊겼다.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에 내몰려 폐업도 속출했다.

실제 지난 1분기 외식시장 경기지수는 59.97로 기준치(100)를 훨씬 밑도는 ‘역대 최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는 비교적 식사공간이 넓은 대형 외식업체보다는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찾아왔다.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 영업주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각 매장이 해외처럼 야외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모인 복합 문화 플랫폼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외식 문화를 만드는 부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의욕적’ 법 개정 전 先시행 분위기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선제적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감염 우려로 밀폐된 공간을 꺼리는 시민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동시에 옥외영업 허가로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지자체 조례 등을 바꿔 우리부터 먼저 시행하겠다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고양, 안양, 과천, 화성, 하남, 광명, 인천 서구, 전북 전주 등이 ‘테라스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고양시는 정부의 입법예고 이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고양시 전역에서 한시적 허용했다.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11시~오후 9시 옥외영업을 시행 중이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 1985곳으로 1층 영업장에 한정했다.



[‘고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협약 체결]



※ 출처 : 이뉴스투데이 / 사진 : 고양시

인천 서구도 관내 식품접객업 644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다”고 전제하면서 “옥외영업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인천 서구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살인적인 임대료에 테라스 조금씩 넓혀가자 주장도

테라스 영업을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자체의 빠른 실행이 중요해졌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국내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에서 테라스 영업에 대한 자율규범과 우수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상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와 지방 상회에 전달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자영업자들도 쉽게 테라스 영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관련 문의나 애로사항은 지자체가 전담반을 꾸려 적극 현장에서 취합해 행정예 반영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테라스 영업을 ‘사유지 내 공지’인 옥상과 테라스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처럼 공개공지, 즉 보도까지 조금씩 늘려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살인적인 임대료에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영업시간을 정해 놓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면 서울 ‘힙지로(hip+을지로)’와 같은 뜨는 상권이 만들어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실제 미국 뉴욕은 고밀도 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제조업지구에서 전면공지와 보도에서의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경우 도시 전역에서 보도 위 영업을 가능하다. 파라솔과 의자를 기준으로 최소보폭 보행 2m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대표 도시는 프랑스 파리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입간판까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최소보폭 보행 0.6m 기준 옥외 영업을 가능하다.



[외부공간을 활용한 해외 옥외영업 사례]



※ 출처 : 오마이뉴스

대한상의 측은 “제도를 혁신하다 보면 벌일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 경제팀이 나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원칙을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고 재설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6월 22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1.2	3.4	2.0	2.3
세계	3.6	2.9	-3.0	5.8	2.4	3.3
미국	2.9	2.3	-5.9	4.7	1.9	2.1
중국	6.6	6.1	1.2	9.2	4.9	6.4
일본	0.8	0.7	-5.2	3.0	0.2	0.7
EU	1.9	1.2	-7.5	4.7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1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64	1,194	1,220	1,225	1,229
원/엔(100엔)	1,009	996	996	1,065	1,085	1,135	1,135	1,146
원/위안	167.5	166.4	166.4	168.0	170.5	173.8	172.9	172.5
원/유로	1,276	1,299	1,299	1,294	1,302	1,350	1,332	1,339
유가(Dubai)	53.2	69.7	63.5	64.3	54.2	33.7	20.4	30.5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	2.6	1.6	0.6	-0.6	4.9	0.8	-5.0	-
소매판매	1.9	4.3	2.4	1.8	-2.4	-8.0	-2.2	-
설비투자	14.4	-3.6	-6.2	-4.1	16.0	10.1	1.4	-
수출	15.8	5.4	-10.4	-6.6	3.6	-1.4	-25.1	-23.7
수입	17.8	11.9	-6.0	-5.2	1.4	0.2	-15.8	-21.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